

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안

□ 제안이유

호적법 제130조, 제131조, 제132조의2, 동법시행규칙 제52조에 과태료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 상세히 명시하고 있고,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서 의하면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동 조례는 존치 필요성이 없음

□ 주요골자

○ 동 조례 폐지

□ 검토의견

- 동 폐지안은 그동안 실효성없이 존치하고 있던 각종 규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규제 정비추진계획에 따라 폐지안이 상정된 것임.
- 상위법인 호적법과 동법시행규칙에서 과태료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폐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